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1월 19일, 문진석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2. 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문진석)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에게 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이들 핵심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도록 하고, 동 핵심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을 받은 이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가. 동일한 결함 발생시 안전성 인증 취소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

현행법에서는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며, 핵심장치 등의 안전성인증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 장치 등이 자동차 안전 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되는지 검사(적합성 검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인증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핵심장치에서 제작결함이 발생하여도 곧바로 해당 장치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핵심장치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하거나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핵심장치등의 제작·판매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장치등에 대한 결함 발생시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안전성인증 취소 관련(안 제30조의7)

개정안은 2년 이내에 일정 횟수 이상의 동일한 결함 발생시 해당 장치의 제작·판매의 중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작과정에 대한 적합성검사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결함은 중대한 것부터 경미한 것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함 발생횟수만을 기준으로 인증 취소 또는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하위 법령에서 인증 취소 또는 판매 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결함의 경중 및 발생횟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2) 시정명령 관련(안 제31조의5)

현행법 제31조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에 따라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사등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핵심장치 등의 결함에 대해 별도의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제도와 중복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나.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전기차 화재사고 현황 >

구 분	2021	2022	2023	계(건)
운행중	12	22	34	68
주차중	6	9	21	36
충전중	4	9	13	26
기타	2	3	4	9
합계	24	43	72	139

자료 : 소방청

이렇듯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제조사들은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자 및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